

알 상하차 시·분동 시 방역 관리 요령

최근 가금농가 및 철새 도래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전국 가금농가에 대한 차단 방역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전국 지자체 및 관련 기관, 단체에 HPAI 전파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므로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신속한 방역수칙 전파와 철저에 만전을 기해달라 전했다.

특히 야생조류의 분변을 통해 전파되는 바이러스인 만큼 농장 외부에서 유입되는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관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위험주의보는 11월 29일부터 12월 26일까지 4주간이며, 필요시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이번 호에서는 알 생산 가금농장에서의 알 상차 장소 질병 유입 방지를 위한 방역 관리 요령과 분동 시 방역 관리 요령을 소개한다.

한편, 11월 29일 기준,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등 8개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검출됐다.



HPAI 위험주의보 발령 전파 위험성 매우 높아 방역수칙 철저히 지켜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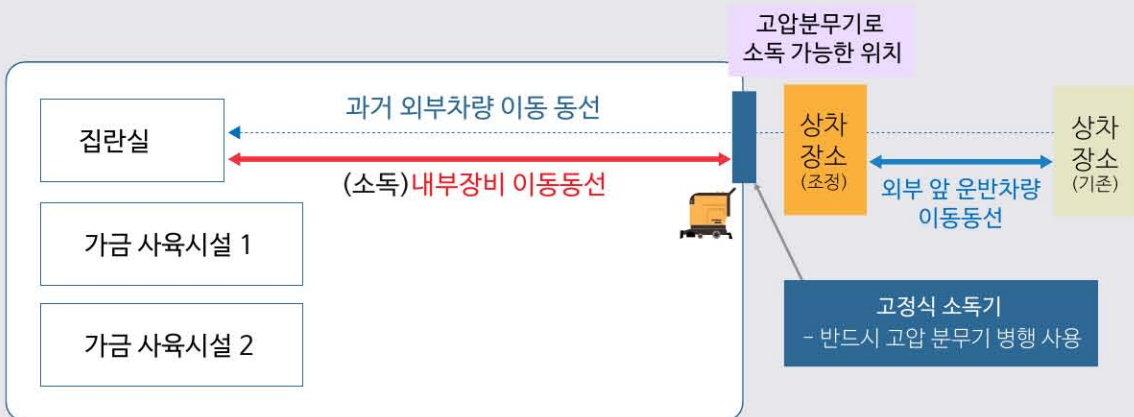
알상차 장소 방역관리 요령

산란계, 종오리, 종계 및 메추리 농장 등 알 생산 가금농장에서 상차 장소(환적장)를 운영 시 알 운반 차량이나 사람이 수시로 드나들어 농장 교차오염의 위험이 있다. 따라서 교차 오염을 통한 농장 내 질병 유입 방지를 위해 농장 내외부를 분리하고 방문 차량과 사람이 있을 때마다 소독을 자주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알상차 관리 장소 점검

- 적용대상 : 산란계, 종오리, 종계, 메추리 농장
- 소독 등 운영 : 농장 종사자 또는 알 환적장 관리자
- 운영 점검 : 주 1회 지자체(시군구)
 - * 관할 지역 내 농장 내 상차 장소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주기적 점검
- 운영실태 확인 : 시도 및 검역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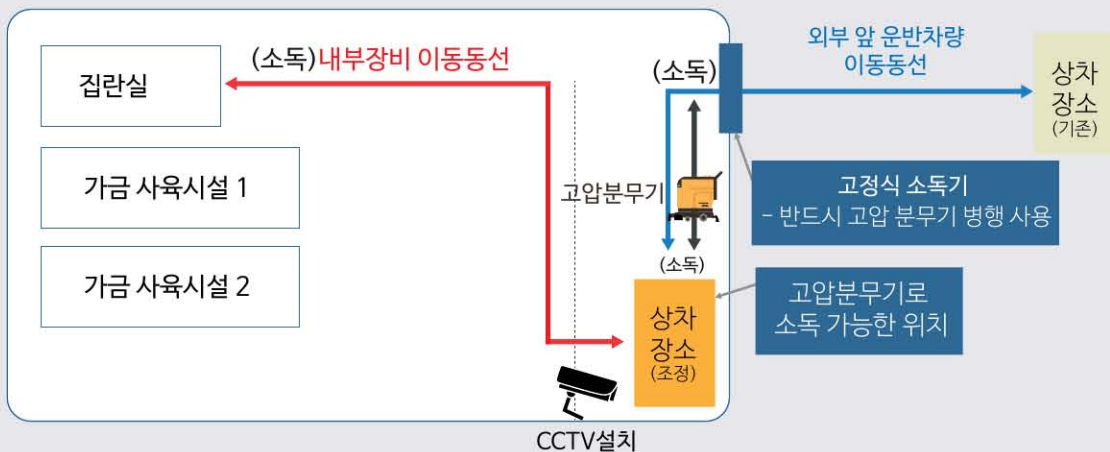
알상차 장소 운영요령(예시1)



알 상차 장소 방역관리 요령

- 알 상차 위치는 고압분무소독기로 소독이 가능한, 농장 출입구 밖 또는 출입구 인근의 구획된 장소여야 한다. 만약, 농장과 멀리 떨어진 장소(예 : 50m 이상)에서 상차하는 경우에도 해당 장소에 고압분무소독기 등 소독시설을 구비·운영해야 한다.
- 상차 장소에 출입하는 알 운반차량(사람, 파레트 등 포함) 등 외부차량에 대해 진출입 시마다 소독을 실시한다. 특히 U자형 고정식 소독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고압분무소독기를 활용하여 차량 바퀴와 차량 하부 등을 추가로 꼼꼼히 소독한다.
- 알 운반에 사용되는 농장 내부 차량·장비(지게차·손수레 등 포함) 등과 외부 알 운반차량은 상차 장소를 기준으로 교차되지 않도록 엄격히 분리하고 농장 내부 차량·장비도 농장 출입 시 마다 소독을 실시 한다. 농장 내부의 차량과 장비는 상차 장소 밖으로 진출입을 하지 않는다.
- 알 상차 전·후로 상차 장소를 수시로 청소·소독하고 농장 마당, 길, 도로 등 이동동선을 매일 1회 이상 소독한다.
- 외부 알 운반차량에 대해 축산차량 등록 여부 및 GPS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농장 종사자 또는 환적장 관리자는 상차 장소에 출입하는 차량이 축산차량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GPS 고장 등 미흡 사항이 확인된 경우, 출입을 금지시키고 즉시 방역 기관에 신고한다.

알 상차 장소 운영요령(예시2)



오리농장 등 분동 시 방역관리지침

2020년과 2021년 AI 발생 오리농장의 56%(48호 중 27호)에서 분동 시 병아리가 외부 노출되고, 분동 장비를 외부에 보관하는 등의 미흡 사항이 확인됐다. 특히 최근 발생농장에서도 분동 시 미흡사항 등이 확인됐다.

오리 농장 내에서 오리 병아리를 각기의 축사(동)로 분동 시, 오리 병아리는 바닥 등 외부에 노출되어 AI 바이러스에 오염될 위험이 크다.

따라서 오리 농장은 분동을 최소화하고, 분동 시 외부와 차단된 분동 통로를 설치·운영하는 등 외부에 노출되는 환경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01 분동 전

분동하고자 하는 축사를 사전 청소·소독하고, 분동 시 이동하는 경로(바닥)를 분동 직전에 청소,소독 한다. 분동 시 사용하는 기자재(물이망, 바닥 깔개 등)의 청결 상태를 확인하고 소독하도록 한다. 작업자는 필히 방역복을 착용하고, 손 소독과 신발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02 분동 시

분동 시에는 외부와 차단된 분동 통로를 설치한 후 분동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바닥에는 세척·소독된 부직포 또는 1회용 비닐 등을 도포하여 오리 병아리와 바닥이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오리 이동경로의 양 측면에는 세척·소독된 물이망 등을 설치하여 오리가 소독된 이동경로 바깥으로 빠져 나가지 않도록 조치한다.
작업자는 분동하고자 하는 축사에 출입 전 축사별 전용 신발을 착용하고 신발과 손 소독을 실시한다.

03 분동 후

분동 시 사용한 기자재·장비 등은 세척·소독 후 건조하고 외부 오염으로부터 차단을 위해 실내 공간에 보관한다.

위반시

「가축전염병 예방법」제60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오리 농장 분동통로 설치·운영 공고(21.10.12)를 준수하지 않는 행위는 방역기준(제17조의6)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
- 해당 미흡 농장에서 고병원성 시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 감액

